

차별 제소는 다음 기관에도 동시에  
제기할 수 있습니다:

- U.S. Department of Health & Human Services  
Director, Office for Civil Rights (OCR)  
Room 509-F, HHH Building  
200 Independence Avenue, SW  
Washington, DC 20201  
Telephone: 1-800-368-1019  
TDD: 1-800-537-7697  
<https://ocrportal.hhs.gov/ocr/portal/lobby.jsf>  
<https://hhs.gov/ocr/office/file/index.html> (forms)
- U.S. Department of Agriculture  
Office for Civil Rights  
Room 326-W, Whitten Building  
1400 Independence Avenue, SW  
Washington, D.C. 20250-9410  
Phone: (866) 632-9992 (Toll Free)  
(Voice)  
(800) 877-8339 (Relay)  
(800) 845-6136 (Spanish Relay)  
Email: [programintake@usda.gov](mailto:programintake@usda.gov)
- U.S. Department of Agriculture  
Regional Office  
90 7<sup>th</sup> Street, Ste. 10-100  
San Francisco, CA 94103  
(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- SNAP)
- U.S. Department of Education  
Region IX, Office of Civil Rights  
915 Second Avenue, #3310  
Seattle, WA 98174-1099  
(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)
- U.S. Department of Justice  
Office for Civil Rights  
810 7<sup>th</sup> Street, NW  
Washington, D.C. 20531  
(Youth Services)

- U.S.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
Office of Civil Rights  
451 7<sup>th</sup> St., SW  
Washington, D.C. 20410  
(Housing/HPHA)

## 정책 근거

동등 서비스 기회에 관한 기본 정책은  
수정된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 
1964; Title VI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 
1968; Title IX of the Education  
Amendment of 1972; Section 504 of the  
Rehabilitation Act of 1973; Title II of the  
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 
과, 하와이의 수정 법령체계의 범위  
이내에서 적용해야 합니다.

## 질문

인권서비스국의 시민권 제소  
담당자에게 서면, 이메일, 또는 전화로  
접촉할 수 있으며, 연락처는 다음과  
같습니다:  
Civil Rights Compliance Office  
Queen Liliuokalani Building  
P. O. Box 339  
Honolulu, Hawaii 96809-0339  
전화: (808) 586-4955  
TTY(청각장애인): Hawaii Relay Services 711  
팩스: (808) 586-4990  
이메일: [DHSCivilRightsBox@dhs.hawaii.gov](mailto:DHSCivilRightsBox@dhs.hawaii.gov)

**JANUARY 2018**

DHS 050 KOR



**Department of Human Services**

# ACCESS HAWAII

## 하와이에 다가가기

### 당신의 권리와

### 우리의 책임

### 시민권 브로셔

다른 양식이 필요하면  
이곳으로 연락: 586-4955

Korean

## DHS 정책

인적서비스국(DHS)의 정책은 DHS 의 프로그램, 활동 그리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인종, 피부색, 출신국, 연령, 장애, 성, 종교와, 연방법과 주법이 수정에 의해서 또는 정규적으로 보호하는 그 밖의 영역에 대하여 동등한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

이 정책은 조직 내 부서, 에이전시 전부, 그리고/또는 DHS 와의 계약 또는 기타 배치에 의해 주 또는 연방의 자금 지원을 받는 모든 위원회와 조직에 적용됩니다.

주와 연방의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은 어떠한 특정한 또는 특정 집단이라도 참여가 거부되는 효력이 없도록 계획하고 수행해야 합니다.

## 차별

차별은 공공연하고 사소한 것 사이에 수많은 형태가 있지만 ‘개인’ 또는 ‘집단’이 서비스에 평등하게 접근하는데

적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:

- 서비스 자격 결정에서 개인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;
- 개인들에게 서비스를 구분하거나 별도로 대우하여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하지 못 하게 하는 것;
- 영어 사용에 한계가 있거나 이를 구사하지 못 하는 사람에게 통역자를 배치하지 않거나, 청각 또는 구음 장애인에게 수화통역자를 제공하지 않는 것; 그리고
- 특정한 집단 또는 개인에게 적대적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장시간 동안 제공하는 것.

## 직원의 책임

모든 직원은 DHS 의 동등 서비스 기회 정책(4.10.3)에 책임이 있습니다.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며, 반드시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.

- 모든 개인을 동등하고 친절하게 대우할 것; 그리고
- 사람들에게 동등 서비스 기회, 무료 통역 서비스 제공, 자신의 시민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낄 때 차별 제소의 제기, 그리고/또는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느낄 때 제기하는 내부제소 등 그들의 권리를 알릴 것.

*동등 서비스 접근 제공에 관한 DHS 의 목적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직원은 누구나 해당 단체협약 합의에 의하여 징계처분 대상이 됩니다.*

### 프로그램 담당관들은 서비스

대상자들의 언어, 문화, 그리고 물리적 접근성 필요를 고려하여 서비스 내용을 판단할 책임이 있습니다. 프로그램 담당관들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이 필요에 적합하도록 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도 있습니다.

### 감독자들은 그들의 실무자들이

민원인들을 동등하고 정당하게 대우하며, 특별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제공할 책임이

있다는 것을 주지시킬 책임이 있습니다.  
감독자들은 민원인들에게 차별 없는  
서비스를 알려야 한다는 것을  
주지시켜야 합니다.

## 차별 제소 절차

보호받는 분야에 근거하여 자신이 차별  
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차별대우주장  
제소(DHS 양식 6000 & 6006)를  
제기할 수 있습니다. 동시 재판권이  
있는 제소는 기한 이내에 적절한  
연방과 주 당국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.

서면으로 작성하는 공식 차별대우주장  
제소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

Department of Human Services  
Personnel Office  
Civil Rights Compliance Staff  
P.O. Box 339  
Honolulu, Hawaii 96809-0339  
이메일: [DHSCivilRightsBox@dhs.hawaii.gov](mailto:DHSCivilRightsBox@dhs.hawaii.gov)  
팩스: (808) 586-4990  
전화: (808) 586-4955